

기능성 상추 수출가능 여부 및 관세율

○ 기능성 상추의 일본 수출가능 여부

- 기능성 상추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신선채소류이므로 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, 엽채류의 경우 식물검역시 벌레 등에 의한 훈증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
- 한국산 청과류 취급 전문 수입업체에 문의한 결과
 - ▶ 상추의 경우 유통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판매해야 하는 선도저하 문제
 - ▶ 일본에서도 최근 상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손쉽게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여, 사포닌 성분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적이지 않은 일본내 성격상 공급가격 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○ 해당 품목의 관세율

- 0705-11-000(결구상추) : 3%(WTO협정세율)

○ 기능성 상추 수출시 사전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사항

- 일본의 표시관련 제도는 2015.4월부터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며
- 청과류에 대한 기능성 표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, 기능성 유효성분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자료와 표시계획 등 33종의 서류를 소비자청에 사전에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취득하여야 표시가 가능함